

『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8월 27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의 조제목인 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가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며
- 나.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」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, 관련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
- 다. 「수질환경보전법」이 「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, 관련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개정으로 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가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명칭 변경(2010. 2. 4 일부개정)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, 조례 관련조항의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함(안 제11조)

- 나.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」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으로 제명이 변경(2008. 3. 28 전부개정)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함(안 제15조)
- 다. 「수질환경보전법」이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(2007. 5. 17 일부개정)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함(안 제1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5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.

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의”를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”를 “인천광역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구·군은”을 “군·구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 또는 군·구이”를 “시 또는 군·구가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」을 「환경영향평가법」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「수질환경보전법」을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인천광역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, 군·구,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·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환경정책기본법</u> 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기본이념) ① <u>시</u> 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2조(기본이념) ① <u>인천광역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보고) ① ~ ② 생략	제5조(보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·구 (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요청할 수 있으며 <u>구·군은</u>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·구는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제9조(시민의 책무) ①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<u>시 또는 군·구</u> 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	제9조(시민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 또는 군·구가</u>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 <u>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계획(이하 “환경보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11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 <u>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의한 <u>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수·구청장(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
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

관련법령	☐ 환경정책기본법 ○ 제37조(환경정책위원회) ☐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○ 제11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○ 제15조(환경영향평가) ○ 제16조(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권고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☐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☐ 인천광역시 환경 ·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☐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
관련자료	“해 당 없 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7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<생략>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<생략>

④ <생략>

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<전문개정 2010-2-4>

□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

제11조 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 <생략>

② <생략>

③ <생략>

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수·구청장(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개정 2007-11-5>

⑤ <생략>

⑥ <생략>

제15조 (환경영향평가) ① <생략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」에 규정된 사업을 포함하며 그 외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07-11-5>

제16조 (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권고) ① 시장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환경보전법」 등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규정되지 않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또는 규제대상이 아닌 시설,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현저하게 파괴될 것으로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<생략>